

복지용구

운영규정

참사랑재가복지센터

복지용구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참사랑재가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급여 대상자 및 그 가족, 급여제공 관련 종사자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보건복지부지침, 사회보험 등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기관의 운영

제3조(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방문목욕 등의 재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며, **복지용구의 대여 및 판매를 통하여 수급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명 칭 : 참사랑재가복지센터
- ②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1로 60번길 11

제5조(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① 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서비스의 정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명 이내로 정하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②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 2)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 3) 일반질환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 5) 치매증상으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및 치매증상의 유지·증진이 필요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
- 6)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및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계기관 및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자
- ③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www.longtermcare.or.kr), 생활정보지(부산시대, 벚룩시장), 기관홈페이지, 구보(해운대신문),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 연계협약기관,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모집 한다.

제6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① **계약기간**은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1년 내지 2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 ②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 ③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④ **복지용구 계약**은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의하여 계약 대여 및 판매를 한다
- ⑤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복지용구의 대여 및 판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⑥ **공급계약서의 작성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한다**
 - 1) 복지용구를 공급할 때에는 수급자와 반드시 물품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보호자 또는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본인부담금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하나은행 306-910015-52105 참사랑재가복지센터)를 하도록 한다. 이때 영수증은 '급여비용명세서'로 대체 한다.
 - 2)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및 제품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 할 수 있다.
 - 3)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동안에는 전동.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 4)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월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합니다.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합니다.
- 5)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그 부담 비용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 ①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복지용구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 ③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만 부담한다.
- ④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5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 ⑤ 기관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매월 이용료를 하나은행 (계좌번호306-910015-52105)참사랑재가복지센터로 수납 받고 대상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발급한다.

제8조 한도액

- ①복지용구 급여는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 ②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급여제공금액)의 적용 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개시 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 ③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9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

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한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의 신체기능이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종결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해제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사망

7. 대상자가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제1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후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먼저 구두보고를 한 후 조치하고 결과를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할 수 있으며, 동의 후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 급여 제공의 범위

①급여 제공의 내용은 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한 급여 품목을 구입 방식과 대여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①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판매)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 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일시불 부담하고 대여

③제②항에 따른 급여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 품목

가. 이동변기-1개(5년)

나. 목욕의자1개(5년)

다. 성인용보행기-2개(5년)

라. 안전손잡이-10개(1년)

마. 미끄럼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5개) , 미끄럼방지양말-6켤레)-1년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2개(1년)

사. 지팡이-1개(2년)

아. 욕창예방방석-1개(3년)

자. 자세변환용구-5개 (1년에 판매 가능한 개수)

차. 요실금팬티-4개(1년에 이용 개수)

- 기저귀 센서- 1개 (3년)
-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1개 (5년)
- 배회감지기(태그형) 2개 (2년)
- 고관절보호대 1개 (2년)
- 낙상알림시스템 1개 (5년)

2. 대여 품목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욕창예방매트리스(판매 및 대여가능)
- 배회감지기(대여) 1개 (5년)
- 경사로(실내용(대여) 1개 (8년) 실내용(구입) 6개 (2년)
- 이송보조기기 1개(5년)
-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1개 (5년)

제13조 복지용구 급여기준에 따른 이용 및 본인부담금

-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용구 대여 및 판매에 대하여는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는다.
- ②일반수급자 및 경감대상자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을 일반은 15%, 경감대상자는 7.5%의 본인부담금을 받는다.
- ③내구연한이 있는 품목은 정하여진 내구연한 내에 각 품목 당 정해진 개수만큼 구입 또는 1 개씩만 대여할 수 있다.
- ④2017년 7월 1일부터 대여제품의 내구연한을 적용하게 된다.
대여만료제품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연장대여기간 동의서”를 받아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6-210호(2016.11.16.)[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대여제품의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대여연장기간은 다음과 같다.
전동침대 5년, 수동휠체어는 2년 6개월, 욕창예방매트리스는 1년 6개월이다.
- ⑤구입한 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제품의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복지용구 훼손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수, 재 공급을 받는다.
- ⑥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 복지용구 운영기준

- 1)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를 희망하는 모든 복지용구는 가능한 한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2)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복지용구의 운영규정의 이용자 모집 방법등에 관한 규정은 '방문요양의 운영 규정'에 준한다.

제15조 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

- 1) 복지 용구의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 2) 복지용구 년 한도액을 초과하여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 3)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기간 사용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 4) 복지용구 대여 기간 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제16조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제품의 배송 및 설치는 공급업체 배송 및 설치하고 제품설명은 공급업체 배송 및 설치자에게 들고 기관에서는 유선으로 확인 한다.

제17조 제품의 사후관리(A/S) 및 재고 관리

복지용구의 판매 및 대여를 한 후 발생하는 고장, 수리 및 회수의 경우, 1년 이내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함을 원칙으로 하며, 1년이 경과 시에는 수급자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며, 재고관리는 기관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 제품의 세정 및 소독

복지용구의 대여 제품의 회수 시에는 반드시 세정, 소독을 지정된 기관에 의뢰하여 **위탁소독** 실시하며, 소독필증을 교부 받아 세정, 소독을 실시한 제품을 재 대여한다. 또한 대여 중에 있는 대여제품의 대여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 계약 시는 **자체소독**을 한 후 재 계약 한다.

제19조 제품 안내에 관한 사항

복지용구는 매장 내에 비치되어 있는 복지용구 및 급여제품안내 책자로 대신 한다.

제20조 본 운영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하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준하여 실시한다.

2026년 01월 1일

참사랑재가복지센터